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 번	안 호	1089
--------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한기영, 강동길, 김상진, 김인호,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이동현, 이현찬, 추승우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자동심장충격기는 골든아워 확보에 필수적인 응급의료장비임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기관이 제한적이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 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의무설치 기관 이외에 권장 설치 기관 등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u>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u>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 --- <u>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u> ----- -----.</p> <p>1. <u>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u></p> <p>2. <u>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u></p> <p>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 제1항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제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비용 및 소모품 교체비용 발생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은 기추진 중이나 본 조례안은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비용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

나. 전제

- 2019.6월 기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에서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99.1%이고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개정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은 비용추계 제외(안 제7조 제1항제2호 별표1관련)
- 조례안에 따른 설치지원대상의 수는 3,379개이고, 향후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 미반영

구분	시립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민간 전문장례식장	1000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	전통시장 (등록,인정)	합계
개소수	83	2,808	10	224	254	3,379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병원에 부속되지 않은 민간장례식장,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제2종 근린시설 제외) 등 서울시 담당부서 자료 참조

- 매해 3,379개소의 15%(507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9.27.)의 내용연수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 7년적용. 기추진사업의 소모품 교체주기는 2-4년이므로 2년으로 적용하여 비용산출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기추진사업의 2018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단가인 890천원/대를 적용하고, 소모품인 패드와 배터리는 기중에 따라 80-150천원이므로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단가 150천원/대로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560,350천원(연 평균 512,07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의료장비 지원비용 (안 제7조제1항)	451,230	451,230	451,230	451,230	451,230	2,256,150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 (안 제7조제1항)	-	-	76,050	76,050	152,100	304,200
	소계(b)	451,230	451,230	527,280	527,280	603,330	2,560,350
□ 총 비용(b-a)		451,230	451,230	527,280	527,280	603,330	2,560,350

※ 7차년도 후 3,379개소 설치완료시 총비용 3,007,310천원 발생하며 이후에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 지속 발생. 소모품 교체비용은 3,379개소 설치완료시 연평균 253,425천원 소요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비용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비용 ≒ 2,256,1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지원비용

= 설치지원대상 개소수 × 구입단가
= 507개소 × 890,000원
= 451,230천원

※ 설치지원대상 개소수 = 전체대상(3,379개) × 0.15 = 507개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 ≒ 304,200천원

- 3차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4차년도 동일)

= 교체대상 × 지원단가
= 507대 × 150,000원
= 76,050천원

- 5차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용

= 교체대상 × 지원단가
= 1014대 × 150,000원
= 152,100천원

※ 1차년도와 2차년도는 소모품 비용 미발생하나, 3-4년차에는 각507대분, 5년차에는 1,014대분 발생. 3,379개소 설치완료후 연평균 253,425천원 소요

참고) 2019.3월 기준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8,421개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 규정된 구비의무기관에 설치된 것은 2,604개, 기타(설치대상 외 기관) 설치된 것은 5,817개이나 E-GEN(응급의료포털)등록시 설치처의 유형, 면적, 성격(공공, 민간 등 운영주체) 등을 분류하지 않아 시립사회복지시설과 목욕장업, 종교시설, 민간 전문장례식장, 전통시장 등 기 설치된 곳에 대한 현황 파악 곤란(단 기 설치시설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지원대상 포함가능)